

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
제1차 교육위원회
2022. 08. 25.(목)

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
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교육위원회
(수석전문위원 박용조)

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정한석 의원 외 13명

2. 개정이유

- 관련 상위법인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대안교육시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관계 법률에 따라 ‘대안교육’ 및 ‘대안교육기관’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‘대안교육시설’의 범주를 정함(안 제2조)
- 나.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함(안 제6조)

4. 검토의견

가. 개정취지

-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률상 용어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범위를 확대, 안 제6조제2항의 후단 신설 등 법령을 정비하고자 개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대안교육시설의 범주를 정함(안 제2조)
-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함

다. 종합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및 시설의 지원 사업에 있어 기존 조례안의 대상 및 세부사업보다 넓은 범주에서 대안교육시설의 재정 지원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경상북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중단의 예방효과 상승과 대안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